2026 년도 다중이용업소법 찍기특강

문옥섭 강사

[제 1 부] 2026 다중이용업소법 찍기특강 모의고사 문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1 회 17 번)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등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화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3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1 회 19 번)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와 갱신 공표사항은 같다.

②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책임보험가입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화재위험성 평가결과는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차등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 <보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의 개별기준이다. 위반행위마다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총합은 얼마인가? (26 년 봉투모의고사 1 회 21 번)

> **<보기>**
>
> 가. 화재안전등급 D 또는 E 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나. 안전시설등의 불량사항에 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 다.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라. 화재안전등급 D 또는 E 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2,000 만 원

② 2,400 만 원

③ 3,200 만 원

④ 4,000 만 원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 보고의무 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26 년 봉투모의고사 2 회 17 번)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②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③ 화재 또는 폭발 사고

④ 2 층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5.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2 회 18 번)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④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차등 적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6 년 봉투모의고사 2 회 19 번)

> <보기>
>
> 가.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 빈도
>
> 나.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구획실 수
>
> 다. 화재위험평가 결과
>
> 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마.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① 나, 다, 마

② 가, 다, 라

③ 라

④ 가, 나, 다, 라, 마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26 년 봉투모의고사 2 회 25 번)

> <보기>
>
> 가.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 설치
>
> 나. 영업장 면적의 증가
>
> 다.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 라.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 마.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 영상물 교체

① 가,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중 지상 1 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제외되는 다중이용업소는? (26 년 봉투모의고사 3 회 14 번)

①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③ 산후조리원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

④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3 회 15 번)

① 2,000 ㎡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2 개 밀집한 경우

② 9 층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1 개 있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이 1,100 ㎡ 인 경우

④ 6 층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9 개 있는 경우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3 회 19 번)

① 소화설비에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기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② 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누전경보기가 있다.

③ 피난기구에는 미끄럼대, 피난교, 구조대, 완강기가 있다.

④ 그 밖의 안전시설에는 창문, 누전차단기,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화재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4 회 18 번)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해야 한다.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층수, 수용인원, 면적의 기준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4 회 15 번)

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② 게임제공업

③ 산후조리업

④ 단란주점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다음 중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 경감 대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6 년 봉투모의고사 4 회 18 번)

①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②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④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제 2 부] 정답 및 고득점 상세 해설집

[01 번] | 정답: ③

[핵심 해설] 다중이용업주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번 (무과실 책임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주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②번 (조치 명령 대상자 및 근거):**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방관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합니다.
- **④번 (과태료 산정 기준):** 화재책임보험 미가입 시 일률 부과가 아닌,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02 번] | 정답: ④

[핵심 해설]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때 '화재위험평가 결과'는 필수 고려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기술한 ④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번 (우수업소 공표 사항):**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사항과 갱신 공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②번 (옥외 영업의 다중이용업 제외):** 영업을 옥외 시설이나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됩니다.
- **③번 (보험가입 현황 공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리] 보험요율 차등 적용 고려사항 (시행령 제 9 조의 4)

구분	주요 고려 항목
1. 업종별 특성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 빈도
2. 영업장 규모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평가 결과	화재위험평가 결과
4. 위반 여부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우수업소 여부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03 번] | 정답: ③ (3,200 만 원)

[핵심 해설] 보기의 각 위반행위별 법정 이행강제금 금액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면 총 3,200 만 원이 도출됩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가.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 위반:** D/E 급 조치명령 위반 중 사용금지·제한 위반 ➡ 600 만 원
- **나. 안전시설등 고장상태 방치:** 안전시설등 보완 조치명령 위반 중 고장상태 방치 ➡ 600 만 원
- **다. 실내장식물 교체·제거 명령 위반:** 교체/제거 조치명령 위반 ➡ 1,000 만 원
- **라. 개수·이전 또는 제거 명령 위반:** D/E 급 조치명령 위반 중 개수·이전·제거 위반 ➡ 1,000 만 원
- ➡ **총합계:** 600 만 원 + 600 만 원 + 1,000 만 원 + 1,000 만 원 = 3,200 만 원

[법령 기준]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개별기준

위반행위 구분	세부 위반 내용	부과 금액
안전시설등 조치명령 위반	경미한 사항 / 고장 방치 / 미설치	200 만 원 / 600 만 원 / 1,000 만 원
실내장식물 조치명령 위반	교체 또는 제거 조치명령 위반	1,000 만 원
내부구획 조치명령 위반	영업장 내부구획 보완 명령 위반	1,000 만 원
D·E 급 화재안전조치 위반	공사정지 / 사용금지·제한 / 개수·이전·제거	200 만 원 / 600 만 원 / 1,000 만 원

[04 번] | 정답: ④

[핵심 해설] 다중이용업주가 소방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안전사고 대상 중 추락 사고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단순 '2 층 추락 사고'는 명시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번 (사망 사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 **②번 (부상·중독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는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 **③번 (화재·폭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는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 **④번 (추락 사고 기준):** 추락 사고는 반드시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여야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05 번] | 정답: ④

[핵심 해설] ④번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아닌 '안전관리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③번 (기본계획 항목):** 기본 방향, 정보체계 구축·관리, 화재위험평가 연구·개발 등은 모두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 **④번 (집행계획 구별 팁):** 집행계획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시설 설치, 교육·훈련, 지도, 평가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비교 정리] 안전관리 기본계획 vs 집행계획

구분	주요 포함 내용
기본계획 (소방청장)	•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법령·제도 개선 • 화재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 교육·기술 및 화재위험평가 연구·개발 • 화재배상책임보험 기본방향 및 전산망 구축
집행계획 (시·도지사)	• 밀집 지역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개선 • 소방안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지도계획 •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조치계획

[06 번] | 정답: ② (가, 다, 라)

[핵심 해설]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시 고려 사항은 가(화재발생 빈도), 다(화재위험평가 결과), 라(공개된 법령위반업소 여부)가 포함됩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나. 구획실 수 (X):** 구획실 수가 아니라 '영업장 면적'을 고려합니다.
- **마.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X):** 교육 이수가 아닌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 여부'가 고려 대상입니다.

[07 번] | 정답: ③ (나, 다, 라)

[핵심 해설]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시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변경 사항은 나(영업장 면적의 증가), 다(구획된 실의 증가), 라(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가지입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가, 마 (해당 없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나 피난안내도 교체 등은 내부구조 변경에 따른 사전 신고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08 번] | 정답: ③

[핵심 해설]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 중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나, 지상 1 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지상 직접 연결 출입구 포함)에 위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 ②, ④번 (설치 예외 미적용):**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 지하층 영업장 등은 지상층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 대상입니다.

[09 번] |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물 기준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5 층 이상인 건축물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 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④번은 6 층 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가 9 개로 10 개 미만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번 (밀집지역 기준):** 2,000 ㎡ 내 다중이용업소 50 개 이상 밀집 (52 개 ➡ 대상 O)
- **②번 (층수/업소수 기준):** 5 층 이상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10 개 이상 (9 층 건물 내 11 개 ➡ 대상 O)
- **③번 (바닥면적 기준):**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1,100 ㎡ ➡ 대상 O)

[10 번] | 정답: ③

[핵심 해설] 다중이용업소 법령상 피난기구에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해당합니다. 지문의 '피난교'는 명시된 피난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번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소화기구(자동확산기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 **②번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포함됩니다.
- **④번 (기타 안전시설):** 창문, 누전차단기,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11 번] | 정답: ④

[핵심 해설]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입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번 (시가 보상):**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시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 **②번 (협의 원칙):** 소방관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서로 협의합니다.
- **③번 (지급/공탁):** 협의 불성립 시 지급 또는 공탁 후 통지해야 합니다.
- **④번 (재결신청 기한 오류):** 지문의 '14 일 이내'가 아닌 '30 일 이내'가 정답입니다.

[12 번] | 정답: ②

[핵심 해설]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방)은 영업장이 지상 1 층 또는 지상 접촉층에 위치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 ③, ④번 (요건 적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조리업, 단란주점 등은 업종 특성상 무조건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됩니다.

[13 번] | 정답: ③

[핵심 해설] ③번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재난 경감 대책이 아니라 '안전관리 집행계획' 세부 항목에 해당합니다.

[오답 풀이 및 세부 검토]

- **①, ②, ④번 (재난 경감 대책):**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정보 전달·관리체계 구축, 재난 대비 교육·훈련 및 예방 홍보는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경감 대책에 속합니다.